

승강기 안전관리자 [] 선임
[] 변경 통보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■)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5일
통보인	건물명(상호)		대표자 성명	
	사무소 소재지		사무소 전화번호/팩스번호	
	승강기([]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, [] 피난용 엘리베이터, [] 기타) 소재지			
승강기 안전 관리자 현황	기존	성 명	주민등록번호	
		전화번호	해임 또는 교체일	
	선임 · 변경	성 명	주민등록번호	
		전화번호	선임 또는 변경일	
		승강기관리교육 수료번호	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 (받은 경우만 기재)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통보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붙임서류	별표 8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유의사항

-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-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"기존"란은 공란으로 둔 채 "선임·변경"란만 작성합니다.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"기존"란과 "선임·변경"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.
- 통보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